

6-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3)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서식 6)를 참고하여 아래 42종 교부품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나. 교부품목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심장	35만원	3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심장	38만원	3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②이상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 12 39 09)	시각	3만원	2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교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4	음성시계 (3 22 27 12)	시각	3만원	2년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5	신호장치 (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	58만원	3년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6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	5만원	2년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7	보행차 (3 12 06 06)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지체, 뇌병변	20만원	5년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성인] 실외이동, 실내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지체, 뇌병변	40만원	5년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7번 보행차, 8번 좌석형 보행차, 9번 탁자형 보행차는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여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식사하기 ②이상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 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 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흠이파져있어 음식담기 가 편리함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 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지체, 뇌병변	170만원	3년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 여 자세 변형 완화	[성인] 실외이동, 실내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 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16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청각	80만원	3년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 시켜 청취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	270만원	2년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시각	80만원	2년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 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19	목욕의자 (3 09 33 05)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 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 욕하는 것을 지원	[성인] 목욕하기, 실외 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 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20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시각	90만원	4년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21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지체, 뇌병변	53만원	8년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성인] 실외이동, 실내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여부 확인 필요						
22	이동변기 (3 09 12 03)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성인] 배변, 배뇨, 실외 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35만원	4년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옮겨앉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3 09 03)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5만원	2년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0만원	5년	휠체어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성인] 실외이동 ③이상 또는 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또는 옮겨앉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 상생활 지원	[성인] 앉은자세유지, 겨앉기, 배변, 배뇨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 목이 1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 실 사용하기 중 ②이상 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지체, 뇌병변	40만원	3년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 움이 있을 때 활용	[성인] 실내이동, 실외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 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이상 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89만원	3년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 통 지원	[성인] 전화사용 ②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9	지지대 및 손잡이 (안손잡이) (3 18 18)	지체, 뇌병변	10만원	5년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 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 르게 지지하도록 도와 주는 장치	[성인] 실외이동, 실내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 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핸드레일 미해당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3 18 12 10)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20만원	10년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 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 로 되어 있는 침대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 기, 옮겨앉기 중 ③이상 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31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지체, 뇌병변	150만원	5년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 인의 도움으로 추진하 여 이동 가능	[성인] 실외이동, 실내 이동 중 ③이상에 해당 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지체, 뇌병변	80만원	3년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 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성인] 앉은 자세유지 항목 ②이상 [아동] 걷기와 식사하기 항목 ②이상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지체, 뇌병변	5만원	3년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 하여 낙상 예방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20만원	3년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성인] 배뇨 ③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③이상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3 22 36 12)	뇌병변	5만원	3년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 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 휘 등 선택 가능	[성인] 실외이동 항목 ③이상인 사람 [아동] 걷기 항목 ③이상인 사람
36	개인 비상경보 알람시스템 (낙상알림기) (3 22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55만원	5년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성인] 옮겨 앉기 20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②이상 또는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옮겨 앉기 ②이상 또는 걷기 ②이상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3 18 03 06)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00만원	3년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22 27 16)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3만원	5년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 복용 예방	[성인] 약 챙겨먹기 ② 이상 [아동] 본인물건 관리하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투약알림기에 한함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3 12 12 12)	지체, 뇌병변	140만원	3년	차량내 안전한 탑승과 자세 지원 및 사고 예방	[성인] 앉은자세유지 ②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40	특수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2 36 03)	시각	40만원	5년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기능 제어 등 사용 접근 성 제고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 상
41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3 22 39 12)	시각	85만원	3년	컴퓨터 화면내용의 음 성출력 기능을 통해 정 보접근 향상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 상
42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영상전화기) (3 22 24 03)	청각	120만원	4년	영상을 통한 수어, 손말 이음센터 연결 등 지원	[성인] 전화사용 ②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부 기준

-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 행복e음 처리 : 2품목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향후 동시입력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기능개선 추진)
-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